

TC그룹 조달 정책

1. 서문

도카이카본그룹은, 2030년을 향한 장기비전 속에서 '첨단소재와 솔루션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에 공헌하다'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당사 그룹의 노력만으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며, 공급망을 포함한 공급업체 여러분의 이해,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달 정책은, 도카이카본그룹에 있어서의 조달기본방침과 supplier 여러분과 공유하였으면 하는 가이드 라인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그룹은, 본 조달 정책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에 공헌해 나갈 것입니다.

2. 도카이카본그룹 조달 기본방침

1) 파트너십

당사 그룹은, supplier 여러분을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에 공헌해 가기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고 인식하고, 서로의 발전을 목표로 하여 대등·공정한 입장에서 대하고, 성실한 거래를 실시합니다.

2) QCD와 공정·공평한 평가·선정

당사 그룹은, 조달 물품의 Quality(품질)·Cost(가격)·Delivery(납기·안정성)를 고려하고, supplier의 대처 상황을 공정·공평한 관점으로부터 평가하여 최적의 제품·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조달합니다.

3) 컴플라이언스

당사 그룹은 사업을 전개하는 국가·지역에서 적용되는 모든 법령·규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사회윤리와 양식에 따라 성실한 조달 활동에 노력합니다.

4) 인권 존중

당사 그룹은 세계인권선언(UDHR)이나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 원칙, 국제노동기구(ILO)의 다양한 조약 등 국제적인 인권규약 등을 바탕으로,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조달 활동을 실시하고, 국제적인 인권규약 등과 각국·지역의 법령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후자를 준수하면서, 최대한 전자를 존중하는 방법을 추구합니다.

5) 지구 환경·국제사회·지역사회와의 상생

당사 그룹은, 지속 가능한 사회의 실현에 공헌하기 위해, 제품의 원재료·부품이나 자재, 서비스 등을 조달할 때는, 자원 보호나 환경 부하를 고려합니다.

또한, 각국·지역의 문화, 관습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지역사회와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공생을 도모합니다.

3. 공급업체 공유 가이드라인

당사 그룹은 공급망 전체에서 사회적 과제의 해결에 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upplier 여러분은, 이하의 항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당사 그룹과 함께 준수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supplier 여러분이 조달하고 있는

supplier chain의 상류에 위치한 기업에 대해서도 본 가이드라인의 주지·준수를 촉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1) 성실하고 공정한 사업 활동

- ① 사적 독점, 카르텔·담합 등의 부당한 거래 제한, 또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 방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각국·지역의 경쟁법, 각종 규제를 준수할 것.
- ②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금전의 수수, 과도한 접대, 그러한 요구, 그 밖의 어떠한 형태의 독직, 뇌물수수, 자금세탁, 공갈, 횡령, 착복 등에 관계하지 말 것.
- ③ 사업을 전개하는 각국·지역의 법령 등에서 규제되는 기술·물품 등의 수출입에 관해서 적절한 절차·관리를 실시할 것.
- ④ 안전·품질에 관한 각국·지역의 법령을 준수하고 ISO9001 인증을 비롯한, 안전·품질을 확보하는 전사적인 구조를 구축·운영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적정하게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
- ⑤ 상기 외에 사업을 전개하는 국가·지역에서 적용되는 모든 법령·규제를 준수할 것.
- ⑥ 원재료 등의 상류 공급망에 대해 각국·지역의 법령·규제를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제품·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원재료 등의 상류 공급망까지 거슬러 올라가 수집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할 것. 당사나 당사의 고객 등으로부터 정보공개 의뢰가 있을 경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2) 인권 존중과 안전한 직장 환경

(1) 인권존중

- 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이나 학대, 각종 괴롭힘을 비롯한 비인도적 취급을 금지할 것. 또한, 모든 국가·지역에서의 기업 활동에 있어서, 아동노동, 강제노동, 노예노동, 인신매매와 같은 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을 것.
- ② 노동조건 및 노동시간, 임금에 관한 각국·지역에서의 노동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임금에 관해서는 법정최저임금을 충족한 후,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임금의 제공에 노력할 것.
- ③ 종업원이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 또는 결사하지 않을 권리, 단체 교섭권을 각국·지역의 법령에 근거해 인정할 것.
- ④ 상기 외에 사업을 전개하는 국가·지역에서 적용되는 인권에 관한 모든 법령·규제를 준수할 것.
- ⑤ 분쟁지역 등에서 채굴, 제조된 광물이나 원재료 등(예: 분쟁광물(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코발트·천연고무 등)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환경파괴 등과 관계없는 것을 조달하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 회피를 위한 시책을 실시할 것.

(2) 안전한 직장 환경

- ① 종업원의 직장에서의 안전·건강의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노동안전, 위생에 관한 각국·지역의 법령을 준수해, 사고·재해의 미연 방지에 배려된 환경을 정비할 것.

3)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대비, 지역사회와의 공생

- ① 사업을 전개하는 국가·지역에서 적용되는 환경에 관한 모든 법령·규제를 준수하고, 환경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전반적인 관리 구조를 갖출 것.
- ② 기업 활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생물 다양성을 고려할 것.
- ③ 자원 절약, 에너지 절약, 폐기물의 최소화, 지구온난화물질·유해물질 등의 배출 저감, 효율적인 물 이용과 배수의 적절한 관리에 노력할 것.
- ④ 공동체의 문화와 관습 등을 존중하고,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공생을 도모해 커뮤니티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

4) 기업 정보의 적절한 공개

- ① 이해관계자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을 적시·적절하게 실시하고, 건전한 관계의 유지에 노력할 것.

5) 회사의 자산 및 정보 보호

- ① 각국·지역의 정보관리에 관한 법령과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사내외의 비밀정보나 개인정보는 적절히 보호·관리하며, 적정한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이상.